

사규번호	APS-M-02	분쟁광물(책임광물) 정책	개정일자	2014. 01. 01
폐 이 지	1		개정번호	1.00

표준 승인서

- 문서체계: 관리 규정
- 사규번호: APS-M-02
- 적용 범위: 에이피반도체(주) 임직원 및 고객사(협력사)
- 기안부서 및 기안자: 기획실 이용학
- 구 분: 제정 개정
- 총 Page: 6
- 적용일자: 2014. 01. 01
- 승 인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이용학	김태한	이용학
	2013. 12. 15	2013. 12. 19	2013. 12. 20

사규번호	APS-M-02	분쟁광물(책임광물) 정책	개정일자	2014. 01. 01
폐 이 지	2		개정번호	1.00

분쟁광물(책임광물) 정책

사규번호: APS-M-02

개정번호 : 1.00

에이피반도체주식회사

사규번호	APS-M-02	분쟁광물(책임광물) 정책	개정일자	2014. 01. 01
폐 이 지	3		개정번호	1.00

제•개정 이력

개정번호	개정 페이지 및 내용	작성자	개정일자
1.00	제정	이용학	2014. 01. 01

에이피반도체주식회사

사규번호	APS-M-02	분쟁광물(책임광물) 정책	개정일자	2014. 01. 01
폐 이 지	4		개정번호	1.00

제 1 장. 분쟁광물(책임광물) 정책

제 1 조 (목적)

에이피반도체주식회사(이하 “에이피반도체”라 한다)는 콩고민주공화국과 그 주변국을 포함한 10개국 분쟁국가에서 채굴되는 탄탈륨, 주석, 금, 텅스텐 등을 포함한 특정 광물(이하 “분쟁광물”) 및 코발트의 판매 자금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대상국가의 인권침해에 사용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윤리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는 책임 있는 기업시민으로서 분쟁 지역 내 무장세력과 연관된 분쟁광물이 자사의 제품생산을 위한 공급사슬 내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분쟁광물(책임광물) 정책”을 수립 시행한다.

제 2 조 (적용 범위)

본 정책은 에이피반도체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에이피반도체와 거래하는 협력업체 등 함께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1. 분쟁광물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탄탈륨, 주석, 금, 텅스텐 등의 광물을 지칭한다.

분쟁광물로 인해 창출된 자금이 해당 국가 내 무장 세력으로 유입되어 자국민을 학살할 뿐만 아니라 채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및 강제 노동, 여성 학대 등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제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 의회는 2010년 분쟁광물 사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법률(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을 제정하였으며 상기 법안 1502조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분쟁광물 사용 여부 및 원산지를 조사하고 공급사슬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책임광물

분쟁광물 외에도 채굴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환경파괴 이슈가 제기되는 광물을 의미하며 분쟁의 자금줄이 되지 않고 인권과 환경을 존중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채굴된 광물을 지칭한다.

사규번호	APS-M-02	분쟁광물(책임광물) 정책	개정일자	2014. 01. 01
폐 이 지	5		개정번호	1.00

제 2 장. 분쟁광물

제 4 조 (분쟁광물 관리 정책)

1. 에이피반도체는 분쟁광물을 규제하는 국제기준을 준수하여 고위험 지역으로부터 조달되는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분쟁광물을 규제하는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법률준수를 위한 분쟁광물 업무 프로세스를 수립하여야 한다.
2. 에이피반도체는 광물 사용보고 질의서를 이용하여 자사의 제품에 사용되는 탄탈륨, 주석, 금, 텉스텐 등의 모든 제련소 명칭과 위치를 파악하여야 한다.
3. 에이파반도체는 분쟁광물을 사용보고 질의서의 제출과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서면 확인을 협력사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4. 에이피반도체는 OECD 실사 지침서(OECD Due Diligence Guidance)에 따라 실사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력사가 분쟁광물 사용보고를 위해 수행한 절차 및 자료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5. 에이피반도체는 국제 법규 및 정부기구, 고객 정책 등을 분석하여 내부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에이피반도체는 체계적인 공급망 관리를 위하여 협력사와 공동 대응하며 정부의 정책 및 지원내용을 모니터링하여 분쟁광물 규제 대응과 함께 점진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제 5 조 (협력업체 및 계약업체에 대한 요청)

1. 협력사는 에이피반도체의 “분쟁광물(책임광물) 정책”을 이해하고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협력하여야 한다.
2. 협력사는 에이피반도체에 납품하는 제품에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의 무장세력에 이익을 기여하는 분쟁광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문서화된 분쟁광물 관리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3. 협력사는 에이피반도체의 요청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여 적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협력사는 공급사슬 내 위험이 발견된 경우 적시에 시정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규번호	APS-M-02	분쟁광물(책임광물) 정책	개정일자	2014. 01. 01
폐 이 지	6		개정번호	1.00

제 3 장. 책임광물

제 6 조 (책임광물 관리 정책)

에이피반도체는 콩고민주공화국 코발트 광산의 인권 침해 이슈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글로벌 광물 이슈에 적극 대응하여 광물 채굴이 분쟁의 자금원이 되지 않고 인권과 환경을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광물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에이피반도체는 협력사의 분쟁광물 사용에 대해 정기적으로 CMRT*, EMRT* 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분쟁광물 리스크를 사전 식별 및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사 및 협력사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책임 있는 광물 사용에 대해 국제적 협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며 이를 통해 분쟁지역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책임광물에 대한 동향을 꾸준히 파악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MRT: Conflict Minerals Reporting Template

EMRT: Extended Minerals Reporting Template

본 분쟁광물(책임광물) 정책은 2014년 01월 0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